

대학원 경영학과 운영내규

제정	2002년 4월 26일
1차 개정	2004년 5월 21일
2차 개정	2007년 5월 22일
3차 개정	2008년 4월 11일
4차 개정	2013년 5월 7일
5차 개정	2015년 3월 24일
6차 개정	2015년 9월 8일
7차 개정	2016년 3월 8일
8차 개정	2016년 10월 4일
9차 개정	2018년 4월 10일
10차 개정	2018년 6월 12일
11차 개정	2020년 6월 25일
12차 개정	2021년 11월 8일
13차 개정	2025년 11월 11일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경영학과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교수의 선정 및 논문지도)

1.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2차 학기 중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고 논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은 학칙에 따라 논문지도 등록을 해야 하며, 수료생은 수료 후에도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매 학기 논문지도 등록을 해야 한다(2차 개정 신설).

제3조(연구 및 강의능력 배양)

1.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연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외부 연구프로젝트의 수주 및 기타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2차 개정 신설).
2. 지도교수는 전체 전공교수와의 협의를 통하여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선발하여 장래교수 요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부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정규과목으로 6학점 이내에서 강의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1차 개정 신설).

제4조(학위논문의 제출자격)

1.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과정은 2학기 이상 그리고 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 박사학위논문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함)를 1차 공개발표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라 전문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해야 한다(2차 개정 신설)(4차 개정 수정).
3. 전문학술지는 등재지, 등재후보지를 의미한다.
4. 4조 2항의 게재 조건은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의 경우 주저자(교신저자)여부에 관계없이 인정한다. (4차 개정 신설)

제5조(제안서 및 학위논문의 공개발표)

1. 박사과정 제안서를 공개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생은 제3조 1항에 따라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수료생은 제2조 2항에 따라 수료 후 매 학기에 논문지도 등록을 해야 한다(2차 개정 신설) (4차 개정 수정).
2. 박사과정 1차 공개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전 학기 제안서 발표를 한 학생으로 하며 동일 학기 제안서 발표와 1차 공개발표를 중복할 수 없다. (4차 개정 신설)
3. 제안서의 공개발표는 매 학기 학과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서 시행하며, 합격 여부는 참석교수들의 공동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4. 학위논문의 제출자는 제안서의 공개발표에서 합격한 자로 하며, 학위논문을 제출한 해당 학기 초에 실시하는 워크숍에서 학위논문의 공개발표를 해야 하며, 공개발표의 합격여부는 해당 전공교수들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선수과목의 이수 및 지정)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지정되는 선수과목을 학부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1. 경영학(경상계열 포함) 이외 전공자는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경영학부 개설 교과목 중 아래의 12개 지정 과목에서 3과목을 선택하여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지정 과목: 경영학의 이해, 경영수리와 통계, 정보시스템, 조직행동론, 인적자원관리, 오퍼레이션매니지먼트, 재무관리, 금융투자관리, 관리경제, 마케팅, 소비자행동, 디지털마케팅 방법론)
2. 제6조 1항에도 불구하고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전적교의 성적표를 검토하여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선수과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직장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판단하여 선수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4. 신입 유학생의 경우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한국어를 수준별로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추가 이수학점의 부여)(8차 개정 수정)(9차 개정 수정)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 및 석사과정의 전공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이수학점을 부여한다. 단, 석사학위 논문을 쓰지 않고 입학한 자의 경우 연구능력 제고를 위해 아래의 추가 이수학점 의무외에 각 전공별로 개설되는 세미나 1과목을 추가로 이수한다.(8차 개정 수정)

1. 학부 비경영학 전공 & 대학원 특수대학원(비경영전공) --- 6학점배정
2. 학부 비경영학 전공 & 대학원 특수대학원(경영전공) --- 3학점배정
3. 학부 비경영학 전공 & 대학원 일반대학원(비경영전공) --- 6학점배정

(부여 및 면제의 판단 근거)

1. 경영 전공의 유무보다 학위논문 작성 경험을 적극 고려하여 주임교수의 재량하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지 않고 입학한 자의 경우 각 전공별로 개설되는 세미나 1과목을 추가로 이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2. 경영관련 업무 10년 이상 근무자인 경우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최대 3학점까지 면제할 수 있다. (9차 개정 수정)

제8조(필수 과목의 이수) (12차 개정 수정)

1.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은 필수과목인 연구조사방법론 과목을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9차 개정 신설)
2. 필수 과목인 연구조사방법론 수업은 매학기 개설되며, 이는 경영학과의 5개 전공에서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개설한다. (9차 개정 신설)
3.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자는 반드시 부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주전공 분야의 과목은 적어도 6개 과목 이상, 부전공 분야의 과목은 적어도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9차 개정 수정)
4. 석사과정에 재학하는 자는 반드시 주전공 분야의 과목을 적어도 4개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9차 개정 신설)
5. '3'항의 부전공 이수시, 경영학과 이외 IT정책경영학과, IT유통물류학과, 안보공익학과, 프로젝트 경영학과에 개설된 과목도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 전공교수가 개설한 교과목은 제외한다. (12차 개정 신설)

제9조(종합시험의 실시)(10차 개정 수정)

대학원 학칙에 따라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학위논문 제안서를 공개 발표할 수 있으며, 종합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석사과정은 외국어, 경영학 일반과 전공과목 등 3개 과목으로 하며, 필기고사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1) 경영학 일반은 주임교수가 의뢰하는 2인의 교수가 공동으로 출제한다.
 - 2) 전공과목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제한다.(4차 개정 수정)
2. 박사과정은 외국어, 전공분야의 2개 과목으로 하며, 전공과목은 필기고사를 통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차 개정 신설)(3차 개정 수정)(6차 개정 수정).
 - 1) 전공과목은 응시자가 수료기간 중 수강을 받은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하며, 지도교수의 강의과목을 모두 선택해서는 아니된다. (3차 개정 수정)(4차 개정 수정)(6차 개정 수정)
 - 2) 전공과목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제한다.(6차 개정 수정)
 - 3) 전공과목의 응시자는 적어도 종합시험이 실시되기 4개월 전에 응시원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한다.
3. 외국인 학생이 대학원 시행세칙(28조 5항)에 의거 연구실적으로 외국어

시험을 대체하고자 할 때, 등재 학술지(혹은 등재후보지)에 주저자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0차 개정 신설)

~~제10조(원우회 간부에 대한 처우)~~

~~원우회 간부는 원우회 임원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유도 및 그 노고를 고려하여 선수과목 및 추가이수학점 부여에 있어 추가로 3학점을 면제받을 수 있다.(5차 개정 신설)(11차 개정 삭제)~~

※ 대학원 경영학과 운영내규는 경영학부 대학원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이며 위 내규를 따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안은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이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내규는 2002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04년 5월 21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04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07년 5월 22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2항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3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08년 4월 11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08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4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13년 5월 7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13년 2학기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5조(제5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15년 3월 24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15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추가이수학점의 부여)는 2015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제6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15년 9월 8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15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7조(제7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16년 3월 8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16년 1학기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6조(선수과목의 이수 및 지정관련)는 2016년 3월 현재 해당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제8조(제8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16년 10월 4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16년 2학기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7조(추가 이수학점의 부여)는 2016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제9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18년 4월 10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18년 1학기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7조(추가 이수학점의 부여)는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제10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18년 2학기부터 시행하며, 다만 제9조 (종합시험의 실시)는 2018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제11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20년 6월 25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20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12조(제12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21년 11월 8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21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13조(제13차 개정 내규의 시행)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본 내규는 2026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